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6. 2 7 최광렬의원의 5인
- 나. 회 부 일 자 : 2006. 2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5회 임시회(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06.2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쌍식 의원)

가.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본문 중 어문규범과 명칭 등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맞도록 표기하고,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정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본문 중 어문규범과 명칭 등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12조)
-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안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3조, 제19조, 제25조제1항, 제41조제2항, 제50조, 제66조의2제3항, 제67조제2항)
-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안 제7조의2, 제9조제3항, 제9조의2, 제11조의2, 제14조의2, 제15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5조제4항, 제39조의2, 제48조제6항, 제50조의2, 제52조제4항, 제65조제4항, 제65조의2, 제66조의2, 제4항제5항제6항, 제69조제4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 개정규칙안은 '92년 제정 이후 '98년까지 3차례 부분적 개정은 있었으나 현재 의회 운영상 미흡했던 부분과 불명확함으로써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 조문 등을 개정 보완하고 일부 어문규범과 명칭 등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도 표기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 전국 동시지방선거후 처음과 후반기 의장부의장의 선거일 조정과 임기개시일을 명시하고 의장부의장 보궐선거 당선자에 대한 다른 직과의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음
- 또한 구정질문의 문답방식과 질문순서의 사전 통보를 의무화 하고 의안 제출의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집행부와 사전 의견조율에도 원활을 기하였으며 본회의에 부의하는 의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결산심사시 의안의 회부, 기금운용 계획안 등 심사규정 사항도 추가 신설하였음

- 또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의안의 표결 장소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하는 등 본 개정안은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내부 규율을 보완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함.
- 본 규칙안을 면밀히 검토한바 '98년 일부 개정후 그 동안 개정이나 보완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현재까지 한번도 개정하지 않았던 부분과 특히 그동안 상위법에는 엄존하고 있으나 빠져있었던 의장부의장의 임기개시일 명시 및 의장 사고시 직무대리 지정 조항 등 기초적인 사항을 추가 보완하였음
- 그러나 당초 본 규칙 제정시 상위법에 너무 의존하다보니 아직도 내용의 문구 중 상위법과 구체적으로 동일한 어법이 많아 다소 아쉬운 점도 있음
- 향후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은 제5대 의회를 운영하면서 우리구의회의 실정에 맞추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시 개정 등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